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2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6. 4. 10.

○ 회 부 일 : 2026. 4. 10.

2. 제안이유

○ 지역연고축구단(금산인삼FC)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금산군민축구단(금산인삼FC)” 의 정의 명시
(안 제1조 및 제2조)

○ 축구단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금산군수의 책무 및 예산지원 근거 명시
(안 제3조 및 제4조)

○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선수단 숙소 및 운영비 지원(안 제5조)

○ 경기 및 훈련 등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권 부여
(안 제6조 및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 예산조치 : 연간 200백만원(2026년 기준)

○ 기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4708)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4734)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13148)
- 입법예고(2026. 3. 20. ~ 2026. 4. 9.)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 연고 축구단인 ‘금산인삼FC’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군수가 ‘금산군민축구단을 대표하고, 안정적 운영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상 금산군민축구단은 주식회사로 정의되어 있음. 주식회사의 대표는 상법상 별도로 선임되므로, 군수가 영리 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것이 법률적 책임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운영비·숙소·사용료 감면·시설 우선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집행 보고·검사·환수 규정이 없어 군비 투입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비용추계서에서 연간 2억원, 5년간 10억원을 군비로 추산하였으나,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감독·코치·선수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2억원은 다소 과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경기운영비·마케팅·시설 유지비·물가상승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5년간 동일 금액으로 추산한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